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 제5조 제2항 중 “7인이내”를 “7인(단, 중부교육청은 5인)이내”로 하고,
 동조동항제2호중 “관리국장”을 “관리국장(단, 중부교육청은 교육장)”으로, “재무과장”을 “재
 무과장(단,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)”으로 한다.
 제5조제6항본문중 “재무과”를 “재무과(단, 중부교육청은 관리과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본청 심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, 지역교육청에 두는 심의회(이하 "교육청 심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·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각각의 소속 직원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</p> <p>② 1 (생략) 2. 교육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국장이, 부위원장은 <u>재무과장</u>이 되며, 위원은 각 과장이 된다.</p> <p>③ ~ ⑤(생략)</p> <p>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각각의 <u>재무과</u>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</p> <p>⑦ ~ ⑧ (생략)</p>	<p>제5조(공유재산심의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</p> <p>7인(단,중부교육청은 5인)이내- - - - -</p> <p>② 1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 - - - - 위원장은 <u>관리국장(단,중부교육청은 교육장)</u>이, 부위원장은 <u>재무과장(단,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)</u>이- - - - -</p> <p>③ ~ 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 - - - - <u>재무과(단,중부교육청은 관리과)</u> - - - - -</p> <p>⑦~⑧ (현행과 같음)</p>